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0.

발 의 자 : 문대림 · 윤준병 · 송옥주
김한규 · 김성범 · 부승찬
朴芝源 · 백승아 · 김 윤
이주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, 임산물, 양식수산물,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(이하 “재해보험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의 특성, 재배·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, 최근 제주지역 당근 농가의 경우 가뭄·폭우로 출현율이 낮아져 파종 후 출현율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, 재배·사육 또는 양식 여건

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, 이를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재해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4제1호의2 및 제25조의4 신설).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4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

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4(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, 재배·사육 또는 양식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4(재해보험 등의 심의) 재 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 (이하 “재보험”이라 한다)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 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 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중 앙 수산업·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2조의4(재해보험 등의 심의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의2.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</u> <u>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</u>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25조의4(재해보험 상품의 가입</u> <u>기간 및 가입요건) ① 농림축</u> <u>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</u> <u>장관은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</u> <u>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</u> <u>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가입기간 및</u> <u>가입요건을 정할 때에는 객관</u> <u>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</u> <u>로 보험목적물의 특성, 재배·</u>

	<u>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</u> <u>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야</u> <u>한다.</u>
--	--